

영등포구의회
제134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2008. 1. 28.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

- WHO(세계보건기구) 오타와현장의 활동영역을 근간으로 건강도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영등포구의 건강도시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구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제반 근거를 마련코자 함.

■ 제정내용

- 건강도시 5대 활동영역을 바탕으로 실천사업 추진과 종합적인 기본 계획 수립 등을 명시하여 추진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 구민의 참여 및 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단체 간 상호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 건강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자문을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등 제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관련근거 】 - 따로붙임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책임), 제6조(건강생활의 지원등), 제19조(건강증진사업등)

- 오타와헌장

검토의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라고 하였고(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 라는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 건강도시 사업을 위한 “건강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 5개의 기본원칙과
-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 가입 및 국내·외 정보 교류 연결망 구축” 등 4개의 기본사업을 포함시키되,
- 이 조례가 시행하는 건강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자문을 위해 구의원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건강도시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는 것이며,
- 본 조례안은 주민의 건강과 건강도시 정책 관련 사항을 각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 건강도시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국민건강증진법 등 상위법에 저촉 사항은 없으며 본안과 같이 제정하여 시행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 1. 28.

보 고 자 : 김 병 옥

관 련 근 거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건강생활의 지원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 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 확인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제19조 (건강증진사업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2. 영양관리
3. 구강건강의 관리
4.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5.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6.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③보건소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행한 때에는 이용자의 개인별 건강상태를 기록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시설·운영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오타와 헌장의 5가지 주요 제안

오타와 헌장은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건강 자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다섯 가지 전략에 대하여 초안을 작성하였다.

1) 건강 공중 정책 개발

- ♣ 모든 정책과 법령(예. 교통, 환경, 주택, 교육, 사회적 서비스)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건강을 포함시키는 것(정책과 법령은 모두 건강에 영향을 주기 때문).
- ♣ 그들의 의사결정 결과에서 건강을 고려하고 건강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모든 부문과 모든 수준의 전역에서 모든 정부와 정책 입안자들의 협동 운영 체제를 수립하는 것.

2) 지원적인 환경 창조

- ♣ 서로와 그들의 자연환경을 보살피기 위하여 모든 국가, 지역, 공동체 그리고 개인의 책임을 수립하는 것.
- ♣ 천연 자원을 보존하고(conserves), 자연 환경과 인공 환경을 보호하는 것.
- ♣ 안전하고 만족스러우며, 유쾌한 생활과 작업 조건을 형성하는 것.
- ♣ 건강한 생활양식을 지원하는 것.

3) 공동체 행동 강화

- ♣ 공동체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
- ♣ 공적 참여와 공동체 소유권과 건강 문제의 방향 통제를 강화하는 것.
- ♣ 정보, 자금과 지원에 대한 충분한 이용방법을 제공하는 것.

4) 개인의 기능 발전

- ♣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
- ♣ 정보, 교육을 제공하고 삶의 기능을 향상하는 것.

5) 건강 서비스 재정립

- ♣ 건강을 위하여 권위적이고 개인주의적이었던 것으로부터 책임감과 협력을 공유하는 것으로, 건강과 관련하여 임상과 치료가 지배적인 방향에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구성요소에 초점을 맞춰 예방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건강 서비스의 역할이 확장하는 것.